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한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90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4.

발 의 자 : 윤한홍 · 김성원 · 권성동
김상훈 · 한기호 · 김도읍
강명구 · 권영진 · 엄태영
최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은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하여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규정한 「상법」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고,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하여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.

그런데 미국·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인수·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으로, 「상법」 개정을 통하여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 한해서라도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임.

이에 현행법에 과세특례 대상에 「상법」의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여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(안 제47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상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89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 제목 중 “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”을 “복수의결권주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창업주”를 “복수의결권주식보유자 또는 창업주”로, “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상법」 제351조의3제2항 또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- ① 「상법」 제351조의2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(이하 이 조에서 “복수의결권주식보유자”라 한다)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하거나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(이하 이 조에서 “창업주”라 한다)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「상법」 제351조의3제1항 또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(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) ①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법」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 주(이하 이 조에서 “창업주”라 한다)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(이하 이 조에서 “복수의결권주식”이라 한다)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같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 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.	제47조(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) ① 「상법」 제351조의2제2항에 따라 복수 의결권주식을 받을 자(이하 이 조에서 “복수의결권주식보유 자”라 한다)가 같은 조 제7항 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 에 대한 납입을 하거나 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 6조의11제5항의 창업주(이하 이 조에서 “창업주”라 한다)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 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 이 「상법」 제351조의3제1항 또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

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<u>창업주</u>는 복수의결권주식이 「<u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16조의1 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<u>이연받을 수 있다.</u> ② ----- -----<u>복수의결권</u> <u>주식보유자 또는 창업주</u>----- -----「<u>상법</u>」 제351 <u>조의3제2항 또는 「벤처기업육</u> <u>성에 관한 특별법</u>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